

# 육아정책 소식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9월 20일(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부령)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23일(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유보통합 추진단이 마련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재무회계 규칙 정비방안”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사용하는 상이한 재무회계 규칙을 공통 특성이 반영된 회계규칙으로 정비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세입·세출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접수하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교육부는 12월내에, 보건복지부는 '17. 1월 내 공포할 계획이며 교육 및 홍보를 거쳐 '17.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유치원 세입·세출항목 별도 제시
  - 현재 초·중등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입·세출항목을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별도로 제시하여, 예산편성이 용이하게 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구분하여 명기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의 경우 세입과 세출을 별도항목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활동비 항목을 신설하였다.
- 차입금·적립금 허용
  - 사립유치원 기관운영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법인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되는 차입금 제도를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과 관할청 승인을 거쳐 모든 유치원에 허용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적립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적립금의 규모와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공통특성이 반영된 계정과목 정비
  -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사용하는 계정과목의 용어, 순서 등을 동일하게 정리하고 적립금 및 차입금을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정비
-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위한 적립금 관리방안 적용
  - 기간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외 규정을 삭제
  - 대규모 수선 등 필요 시 적립금을 사용하여 보육환경 개선 가능

## 유치원 규제 개선 및 유사명칭 불법사례 지도·감독 강화

교육부는 2016년 10월 26일(수)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완화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이하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사람은 매년 3월 31일까지 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교육감의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개원예정일 6개월 전(8월말)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개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현행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사기간이 2개월 확대되는 만큼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 및 적기 개원이 가능해져 해당지역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용시설 부족에 따른 일부 고충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발생한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유아를 모집하고 있는 불법사례와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사례가 발견되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감독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유아교육 발전 및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교육현장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유사명칭 사용 등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11월 1일 “처음학교로”학부모서비스 시작

교육부는 11월 1일 09시부터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학부모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원서 접수, 추천결과 확인 및 등록을 하나의 사이트(www.go-firstschool.go.kr)에서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으로 올해 서울, 세종, 충북 교육청에서 국·공립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 입학에 사용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절차	이용방법
회원 가입 및 내 자녀 등록	보호자는 본인명의로 휴대폰(또는 아이핀)과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로그인하여 유아 정보를 입력한다.
유치원 찾기	유치원알리미(www.childinfo.go.kr)와 연계되어 사전에 유치원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참여 유치원의 경우 모집 요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	참여 유치원의 목록을 검색하고, 유아별로 희망하는 3개 유치원을 선택하면 일괄 접수되며, 접수증 출력이 가능하다.
추천 진행	추천(11월 29일)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청별 일괄 진행되며, 각 유치원별로 지원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 정보를 전면 익명처리한 후 무작위 추천을 통해 진행된다.
추천결과 확인 및 유치원 등록	11월 29일 추천이 끝나면 보호자는 사이트에서 유치원별 선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결과 확인 방법을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이다.

##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추첨 결과 발표

교육부는 11월 29일 서울·세종·충북 관내「2017학년도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추첨 시동식」을 개최하고, “처음학교로(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참여유치원의 일반모집 추첨 결과를 발표하였다(보호자에게 11월 29일 19시 “추첨결과 확인” 안내문자 발송).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원서접수는 11월 22일부터(서울은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서울·세종·충북 관내 510개 국·공·사립 유치원에 총 65,796명의 유아가 접수되었고, 사립유치원도 모집인원보다 초과하여 총 4,730명의 유아가 지원하였다(19개 사립유치원 총 일반모집 모집인원: 1,086명). 이번 추첨시동식은 서울·세종·충북 교육청별로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 시·도 교육감, 국·공·사립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지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학교로” 추진 경과 보고, 추첨 방식 설명, 추첨 시동 순서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추첨 방식은 먼저 유치원별로 접수된 유아 정보를 전면 익명처리한 후 다시 한 번 무작위(Random) 추첨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교육청 관계자(교육감)가 교육청 사이트의 추첨 버튼을 누르면 유치원과 학부모 사이트에 추첨 결과가 동시에 전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토대로 내년도 전국 확대 시에는 보호자의 이용 편의 증진 및 유치원 업무 경감을 높이기 위하여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모든 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2017학년도 유치원비 인상을 상한 고시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는 11월 2일(수)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2017학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고시하였다. 2017년 유치원에서 유치원 원비를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16학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0%”로,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평균에 해당한다. ’17학년도 적용을 위한 유치원 원비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전체 유치원 원비의 1.0%가 ‘인상 한도액(인상 가능 원비)’에 해당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17일 중앙유아교육위원회(위원장: 교육부 차관)를 개최하여, ‘2016년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를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표준유아교육비(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를 총 440천원, 유형별로 공립 531천원, 사립 413천원으로 결정하였다. 유치원이 인상을 상한을 초과하여 원비를 받고자 할 경우,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유아교육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표준 유아교육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향후,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는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과의 현장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유아교육법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및 원비 반환 등 보조금 반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 11월 8일부터 3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입소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8일(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11월 8일부터 적용·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당초 100점이던 입소 순위 점수를 20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3자녀 이상이면 서 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최우선 입소보장을 위해 추가로 가점 300점을 부여하여 총 7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 우선순위에 따른 점수 부여 예 〉

\* 200점(3자녀 이상) + 200점(맞벌이 가구) + 300점(맞벌이+3자녀) = 700점

\* 3자녀+맞벌이 가구가 점수상으로는 최고이나 특정 어린이집에 물릴 경우 입소 가능 인원이 한정되므로 신청 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소

이번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혜택 추가 부여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난 8월 발표된 ‘저출산 보완대책’에 반영된 내용으로서,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 시행하는 것이다. 자녀의 우선입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력할 경우 입소 점수 및 순위에 반영되며, 기존에 3자녀 이상임을 입력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점수가 반영되며, 점수 반영 여부 및 순위 변동 내역은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11월 8일부터 2017년도 신학기 입소를 위한 입소대기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알리며,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예정이나 아직 입소 신청을 하지 않은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어린이집 종일반 모범운영 사례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9일(수) 맞춤형 보육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종일반 모범운영 사례 공모전」을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늦게까지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모범 어린이집을 발굴하여 종일반의 모범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을 보다 쉽게 찾고 편하게 이용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우수상(3개), 우수상(6개), 장려상

(15개) 등 총 24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최종 결과는 12월 초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하고, 모범사례는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원하는 어린이집을 쉽게 찾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 등에 게재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종일반 모범운영 사례 공모전 심사 기준** 〉

심사지표	심사내용	배점
기본요건 충족	• 신청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어린이집	적합/부적합
종일반 이용 보장 실효성	• 18시 이후까지 어린이집 운영 여부 및 이용 현황 • 부모 수요조사 실시 여부 및 반영 노력	20
반편성·관리 적정성	• 교사-아동 비율을 고려한 반 편성·관리	30
교사운영의 적정성	• 교사 배치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정도	30
프로그램 활용도	• 프로그램 운영 적절성, 현장 활용도 등	20

##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9일(수)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그간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 처벌강화, 근로여건 개선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 시도, 시군구) 주관으로 121회에 걸쳐 각 지자체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아동권리 및 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이해 ▲어린이집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요령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의 역할(영유아 존중보육 포함) 등을 교육하게 된다. 어린이집 당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보육교사) 1명이 집합교육(2시간)을 받고,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으로 돌아가 여타 보육교직원에게 전달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교육이 영유아의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에서는 교육 참여에 적극 동참하고, 교육이수자에 의한 전달교육을 반드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11일(금)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15.9)’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 및 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 〉

- ①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실 설치 필수(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더 나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무·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하였다.
- ②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필수(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하여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1~3층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하여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